[별지 제13호의2서식] <신설 2010.5.4>

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

재분류된 비공개 총 건수	비공개 유형							
	법령상 비밀 · 비공개 (제1호)	국방 등 국익침해 (제2호)	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(제3호)	재판관련 정보 등 (제4호)	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등 (제5호)	개인사생활 침해 (제6호)	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(제7호)	특정인의 이익 · 불이익 (제8호)

※ 비공개 유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로 하되, 동일 건에 비공개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비공개 사유를 표기